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80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우리사회의 일상적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오랜 남성 중심 역사관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어, 성평등한 시민의식 확립을 위해 여성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와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나. 조선시대 여성의 역사기록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는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구심점 역할을 통해 '성평등 서울' 실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시설로서,
- 다. 여성사 연구, 도서관 운영, 교육·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위치 : 종로구 창신동 7-26 (시유지)
- 규모 : 대지 968.9㎡ / 연면적 763㎡(지하3/지상2층)
 - A동(지하1·지상1, 총 376㎡), B동(지하3·지상2, 총 387㎡)
- ※ 근린공원(1,303.8㎡), 비우당(28.8㎡), 임야(670.98㎡) 사용 예정

○ 공간구성(안)

구분		면적(㎡)	용도
A동	지하1층	222.61	여성사 책방(여성사 서적 비치·열람, 여성사 교육프로그램)
	지상1층	153.44	어린이 책방(어린이·유아 서적 비치, 자유롭고 편안한 열람공간)
B동	지상2층	140.81	여성사 전시코너, 안내데스크, 카페(주민공동시설)
비우당		28.8	가족 공동열람실(평시), 소규모 행사 공간
근린공원 등		1,303.8	가족참여 문화(체육)행사 공간

○ 준공일 : 2019. 8월말(예정)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0. 1월 ~ 2022. 12월(3년간)
- 위탁유형 : 시설위탁(예산지원형)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적격자 심의)
- 조직 및 운영(안)



○ 위탁사무 내용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시설 및 물품 관리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도서 확보(구입, 기증) 및 관리, 대출, 열람 등
- 서울시 여성역사 관련 자료 축적·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변시설과의 네트워크 형성
- 그 밖에 여성의 역사, 성평등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소요예산('20년) : 491백만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성평등기본조례」 제29조, 제45조
-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25조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19. 6. 21)
- 2019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적정) 통보 ('19. 7. 17, 조직담당관-9257)

라. 민간위탁 필요성

-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의 주기능인 여성역사 관련 도서 수집·관리, 기록물과 자료의 발굴·축적·연구, 여성역사 교육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도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이 필요함
- 서울시에서 (가칭)서울여성역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바, 신규 공무원 채용보다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등의 예산 절감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관련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5호 생략

6. 그 밖에 제 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성평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김성룡(☎2133-5008)